

1. 개정이유

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(이하 “허가재검토 검토”)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. ‘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「환경오염시설법」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세부 절차 개정(안 제9조)

사업자는 허가재검토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본 등 제출, 환경부에서 사업자에게 변경 검토 결과서를 35일 이내 통지

나. 환경전문심사원 업무 개정(안 제30조)

환경전문심사원이 허가재검토 시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에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제2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법 제9조제1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(이하 “허가재검토”라 한다)을 위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정하여, 허가재검토 대상 등을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항의 공고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허가재검토 신청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

른 허가조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(이하 “허가조건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변경 의견 등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계획서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등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(이하 “변경검토결과서”라 한다)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·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·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변경검토결과서를 통지받은 사업자는 그 변경검토결과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검토결과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해당

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⑧ (현행 제6항과 같음)

제30조제1호 중 “검토·변경을 위한 기술지원”을 “변경을 위한 기술 검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) <신 설>	제9조(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(이하 “허가재검토”라 한다)을 위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재검토 대상 등을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③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허가재검토 신청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(이하 “허가조건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변경 의견 등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사항(이하 “변경계획서”라 한다)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

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(이하 “허가조건”이라 한다) 또는 허가배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계획을 해당 사업자(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통지 받은 사업자는 그 변경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

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-----제3항에 따라 허가재검토 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계획서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등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(이하 “변경검토결과서”라 한다)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·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·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4항---변경검토결과서를-----
-----변경검토결과서에-----
-----변경검토결과서를-----
-----.

⑥ -----제5항-----

-----.

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30조(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)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·변경을 위한 기술지원

-----.

(삭제)

⑦ ----- 제1항부터 제6항-----

⑧ (현행 제6항과 같음)

제30조(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) ---

-----.

1. -----

----- 변경을 위한 기술 검토
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